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140)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전재수의원안,윤준병의원안, 이수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3
2.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등(전재수의원안,윤준병 의원안,이수진의원안)	7
3.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등 연령 상한 상향규정(윤준병의원안, 조인철의원안, 김주영의원안)	13
4.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확대 (전재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용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	21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14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2. 31.
- (3) 회 부 일 : 2025. 1.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및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로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출 시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들은 고물가·고금리의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에 비해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명목임금이 상승해도 과표가 고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1974년에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어 50년이 지난 현재 자

녀들이 대학 진학 후 졸업 때까지 부모가 부양해야 하는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장인들의 자녀교육 및 보육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제3호러목).

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비과세 대상 급여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제3호머목).

다. 기본공제 항목에서 20세 이하 자녀를 25세 이하 자녀로 연령을 상향하여 기본공제 기준을 현실화함(안 제50조제1항).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를 초등학생과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학원을 포함한 학원까지 확대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전재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수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비과세소득(제12조제3호러목)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u>월 20만원 이하</u> 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과 같음) - <u>월 25만원 이하</u> (김주영의원안) - <u>월 30만원</u> (이수진, 전재수의원안) - <u>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이 법 공포 후 시행(이수진의원안) 이 법 공포 후 3개월(전재수,윤준병,김주영의원안)

* 전재수의원안 2024. 11. 5. 제출(의안번호 5240), 윤준병의원안 2024. 12. 31. 제출(의안번호 7140), 이수진의원안 2025. 1. 17. 제출(의안번호 7602), 김주영의원안 2025. 1. 24. 제출(의안번호 7807)

☐ 개정안은 고물가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으로, 현행 “월 20만원 이하”에서 김주영의원안은 “월 25만원 이하”로, 이수진·전재수의원안은 “월 30만원”으로, 윤준병의원안은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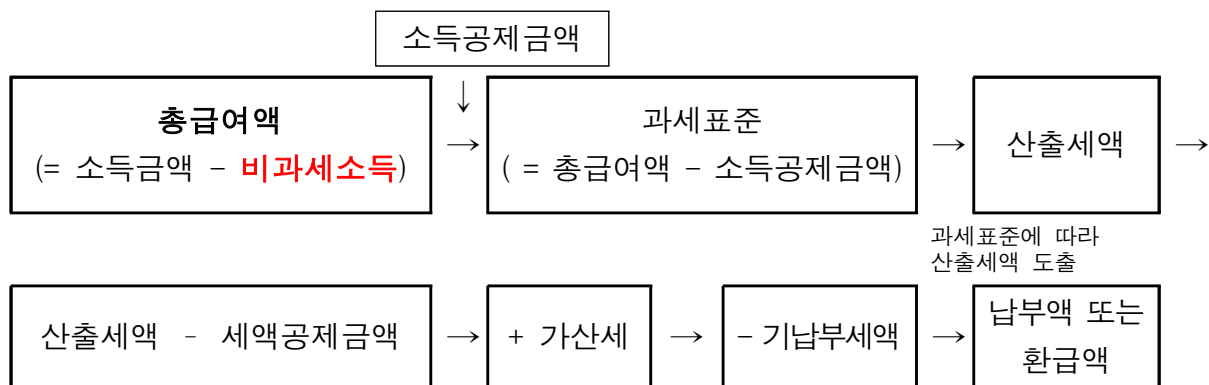
☐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는 199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되면서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5만원 한도로 비과세되었으며, 2004년 한도를 10만원으로 상

향하였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22년에는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였음.

□ 개정안은 고물가로 인한 근로자의 식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개정안과 같이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어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총급여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됨.

[소득세액 계산 절차]



또한,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감소됨에 따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¹⁾의 대상자가 일부 증가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²⁾, 건강보험³⁾, 고

1)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이 있음.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⁴⁾)의 감면 효과도 발생함.⁵⁾

둘째,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외식 관련 소비자물가지수⁶⁾(이하 “외식물가지수”라 함)는 123.8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하였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근로자들의 식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전체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률보다 높아 체감 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월별 외식물가지수]

구분	24년 9월	10월	11월	12월	25년 1월	2월	3월
외식물가지수	121.26	121.86	122.22	122.45	122.89	123.41	123.80
전월 대비 증감률(%)	0.0	0.4	0.3	0.2	0.35	0.4	0.3

주: 외식물가지수는 2020년을 기준(2020=100)으로 함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소비자물가동향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근로자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22년 세법개정으로 10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을 뺀 소득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 조 (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5) 참고로 2022년 11월 진선미의원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 10만원 인상(식사대 비과세 한도 인상)에 따른 4대보험 재정손실은 연간 약 3조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6)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2020=100), 통계청(<http://www.kosis.kr>)

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그 한도를 조정한 것으로 추가적인 비과세 한도 인상은 세수감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할 경우 10만원 인상 기준 연평균 2,992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비과세 소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소득자의 33%를 차지하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⁷⁾는 세부담에 변화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는 비과세소득의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큰 수혜를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시 기업의 식사비 지급 여력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 위주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비과세 소득의 확대에 인하여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세 세수 비중이 낮은 현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수준은 2022년 기준 6.6%로 OECD 평균 8.2%에 비해서는 1.6%p 낮고, G7 국가 평균 10.4%에 비해서는 3.9% 낮으며,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의 경우도 20.5%로 OECD 평균 23.5%, G7 평균 30.9%에 비하여 각각 3.0%p, 10.3%p 낮은 상황임.⁸⁾

7) 2023년 귀속소득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는 688만 명(면세자 비율 33%)이며, 전체 면세자의 99.1%는 총급여 4천만원 이하자임.(자료: 국세통계연보 4-2-5)

2.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등(전재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수진의원안)

현행	전재수의원안	윤준병·이수진의원안
□ 비과세소득(제12조제3호 머목)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한도: 월 <u>20만원</u>)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로부터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 *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하고,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지급받은 급여는 제외 ※'24년 세법개정으로 동 조항 신설	□ 자녀 보육 급여 한도 상향 등 (제12조제3호 머목)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한도: 월 <u>30만원</u>) <u>월 30만원의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윤준병의원안)</u> ○ <u>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u> * <u>종교인소득도 동일하게</u>	□ 자녀 보육 급여 한도 상향 (제12조제3호 머목)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u>월 30만원의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윤준병의원안)</u> <u>월 30만원 이내 금액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40만원) (이수진의원안)</u> ○ (현행과 같음)

현행	전재수의원안	윤준병·이수진의원안
	<u>적용</u> ○ 시행일: 2025.1.1.	○ 시행일: 이 법 공포후 3개월(윤준병의원안) 이 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수진의원안)

* 전재수의원안 2024. 11. 1. 제출(의안번호 5173), 윤준병의원안 2024. 12. 31. 제출(의안번호 7140), 이수진의원안 2025. 1. 20. 제출(의안번호 7629)

□ 3건의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비과세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전재수의원안은 30만원으로, 윤준병의원안은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수진의원안은 이를 30만원으로 상향하되 자녀의 수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하며,

전재수의원안의 경우 자녀보육비 및 출산지원금에 대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은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을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2003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10만원의 비과세한도가 유지되다가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소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⁹⁾이 2017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반등하였으나,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로¹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최근 반등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10)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둘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영유아 가구¹¹⁾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은 월 97만 6천원, 2018년 월 86만 9천원에서 10만 7천원이 증가(12.3%)¹²⁾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녀 양육비용 상승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의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비과세소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¹³⁾는 세부담에 변화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게 되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비과세소득 확대로 인하여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세 세수 비중이 낮은 현 상황¹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겠음.

둘째, 개정안과 같이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어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총급여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됨.¹⁵⁾

11)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12)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1.12. 참고로 동 조사는 3년 주기 조사임.

13) 저소득 면세자는 2021년 35.3%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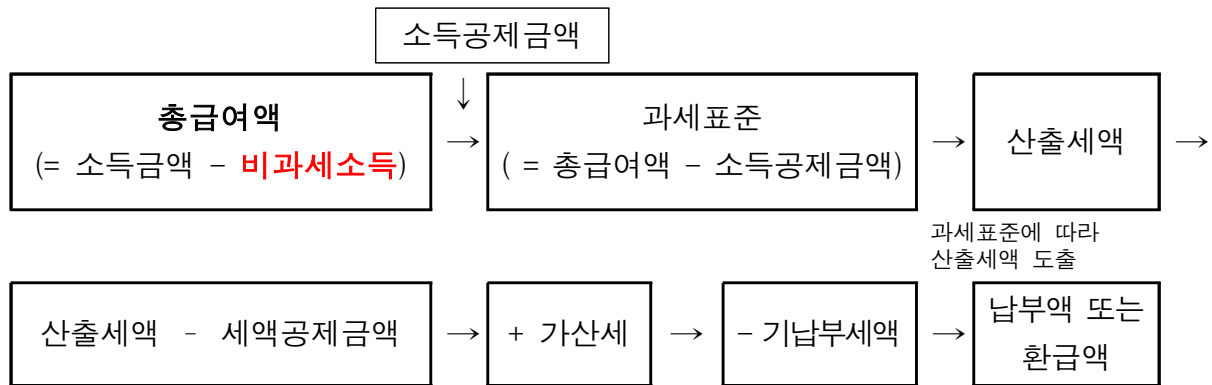
(2014) 48.1% (2015) 46.8% (2016) 43.6% (2017) 41.0% (2018) 38.9% (2019) 36.8% (2020) 37.2%

14) 2021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율은 28.6%이며, GDP 대비 소득세수는 6.1% 인 반면, OECD 평균은 총 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율은 32.4%이며, GDP 대비 소득세수는 8.3%임. (자료: 기획재정부)

1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액 계산 절차]



이로 인해 4대 보험료(국민연금¹⁶⁾, 건강보험¹⁷⁾,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¹⁸⁾)의 감면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¹⁹⁾

셋째,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2003년 보육비용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1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2025년은 2003년 대비 약 1.6배의 물가상승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16)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을 뺀 소득

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 조 (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19) 참고로 2022년 11월 진선미의원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 10만원 인상(식사대 비과세 한도 인상)에 따른 4대보험 재정손실은 연간 약 3조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그 한도가 2배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상향조정된 비과세 한도가 물가수준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한편, 전재수의원안은 현행 규정과 달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2024년 세법 개정 당시 정일영 의원안(의안번호 2200362) 및 윤호
중의원안(의안번호 22003508)에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위원회 심사결과 종교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
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항목에 추가하
지 않기로 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등 연령 상한 상향규정(윤준병의원안, 조인철의원안, 김주영의원안)

현행	조인철의원안	윤준병·김주영의원안
☐ 기본공제(제50조) ○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수 × 연 150만원 - 해당 거주자 - 소득금액 <u>100만원</u> 이하 (총급여액 <u>500만원</u>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 소득금액 <u>100만원</u> 이하 (총급여액 <u>500만원</u> 이하)인 다음의 부양가족 • 60세 이상 직계존속 • <u>20세</u>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u>20세</u>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 • <u>20세</u>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 위탁아동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등 연령상한 상향 규정 ○ (현행과 같음)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수 × 연 <u>200만원</u> - (현행과 같음) - 소득금액 <u>200만원</u> 이하 (총급여액 <u>700만원</u>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 소득금액 <u>200만원</u> 이하 (총급여액 <u>700만원</u> 이하)인 다음의 부양가족 • (현행과 같음) • <u>24세</u>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u>24세</u>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 • <u>24세</u>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연령상한 상향 규정 ○ (현행과 같음) ○ 공제금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다음의 부양가족 • (현행과 같음) • <u>23세(김주영의원안), 25세(윤준병의원안)</u>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u>23세(김주영의원안), 25세(윤준병의원안)</u>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윤준병의원안 2024. 12. 31. 제출(의안번호7140), 조인철의원안 2025. 1. 23. 제출(의안번호 7737), 김주영의원안 2025. 1. 23. 제출(의안번호 7774)

☐ 3건의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및 입양자(이하 “직계비속”) 등의 연령상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윤준병의원안은 직계비속의 연령 상한을 20세에서 25세로,

조인철의원안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상한을 현행 20세에서 24세로,

김주영의원안은 직계비속의 연령 상한을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려는 것임.

□ 인적공제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현행법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인 자로,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75년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제도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 「민법」상 성년 기준인 20세를 참고하여 설정한 것으로,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성년의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으나²⁰⁾ 「소득세법」상 20세 기준은 약 50년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²¹⁾.

20)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1)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1974.12.24., 전부개정]

제65조(부양가족공제) ①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그 居住者의 配偶者를 除外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연 6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부양가족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개정안은 청년층의 사회 진출 시기 지연됨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공제요건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첫째, 인적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인적 공제제도는 납세의무자 본인 및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둌으로써 응능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과세 실현을 취지로 하는 제도임.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고 취업 전 공백 기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아짐에 따라 자격증 취득, 해외유학, 대외활동 등 각종 경험 및 활동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2000년대에는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 중 57% 이상이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였으나, 최근 4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은 48.5%로 감소하는 등 절반 이상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20세~2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인구	3,182	3,139	2,592	3,039	2,877	2,827	2,732	2,629

인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은 3인 이내에 한한다.

1.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자
2.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 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액 이하인 자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경제활동인구	1,842	1,800	1,269	1,567	1,323	1,331	1,352	1,276
비경제활동인구	1,340	1,341	1,324	1,472	1,553	1,496	1,380	1,353
취업자수	1,659	1,623	1,149	1,402	1,181	1,219	1,255	1,202
실업자수	183	177	118	165	142	113	97	74
경제활동참가율	57.9%	57.3%	49.0%	51.6%	46.0%	47.1%	49.5%	48.5%
고용률	52.1%	51.7%	44.3%	46.1%	41.0%	43.1%	45.9%	45.7%
실업률	9.9%	9.8%	9.3%	10.5%	10.7%	8.5%	7.2%	5.8%

주: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총인구, 고용률=취업자수/해당 연령대 인구,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에 개정안과 같이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연령 상한을 상향하는 경우 교육 기간의 연장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입법 및 정책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하고 있고, 동법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²²⁾ 개정안과 같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경우 청년들의 교육 기간동안의 가계부담을 일부 경감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진출을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²²⁾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다른 기준 없이 공제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만 상향조정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으로서 소득을 창출하는 청년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2023년 20~2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5%로,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동 규정에 따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제활동 의사는 있고, 구직활동을 행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실업자’들에 대해 세제 혜택 확대등으로 구직의사가 반감되어 ‘비경제활동인구’로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3년 기준 33%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세제 혜택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학업 등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청년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구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되어 그 혜택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성년인 자녀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상한을 확대하는 것은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

는 측면이 있음. 주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낮은 나이에 직계비속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17세 이하²³⁾, 영국의 경우 16세 이하이되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20세까지²⁴⁾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을 상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자녀세액공제 제도가 납세 의무자 본인 및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종합소득으로부터 제외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적정 연령대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경제 역동성 증대 및 동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⁵⁾

셋째, 개정안과 같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요건을 상향할 경우 연계된 다른 공제대상 역시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이에 대한 적절성 및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의 기준 연령을 상향할 경우 자녀세액공제²⁶⁾ 및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²⁷⁾ 등의 적용대상이

23) The child tax credit benefits eligible parents,
<https://www.irs.gov/newsroom/the-child-tax-credit-benefits-eligible-parents>

24) Child Tax Credit when your child reaches 16
<https://www.gov.uk/child-tax-credit-when-child-reaches-16>

25) 「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 국토연구원, 2020

26)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확대되어 상당한 규모의 세수손실이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윤준병의원안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2,997억원의 세수감이, 조인철의원안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 확대와 별도로 2023년 기준 자녀세액공제에서 2,510억원의 세수감이, 김주영의원안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2,022억원의 세수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2023년 기준-윤준병의원안)]

(단위: 억원)

구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합계
근로소득세	-2,892	-1,288	-4,181
종합소득세	-1,897	-1,709	-3,606
합계	-4,790	-2,997	-7,787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2023년 기준-조인철의원안)]

(단위: 억원)

구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합계
근로소득세	-22,247	-1,061	-23,307
종합소득세	-12,988	-1,450	-14,437
합계	-35,234	-2,510	-37,745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27)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2023년 기준-김주영의원안)]

(단위: 억원)

구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합계
근로소득세	-2,034	-889	-2,923
종합소득세	-1,208	-1,133	-2,341
합계	-3,243	-2,022	-5,26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개정안의 취지가 직계비속의 특수성이 아닌 사회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시기 지연을 고려하여 연령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윤준병·김주영의원안의 경우 조인철의원안과 같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형제·자매의 연령요건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현행법은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을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기본공제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한 부양가족으로서의 본질은 직계비속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도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현행 20세 이하에서 23세 이하로 함께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4.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확대(전재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용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3항 제1호) ○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유치원, 초·중·고 각급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 - <신 설> ○ 세액공제율: <u>15%</u> ○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공제한도 - 대학생: 연 <u>900만원/명</u>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연 <u>300만원/명</u>	☐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초등학생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전재수의원안, 이용선의원안, 이수진의원안)</u> - <u>초등학생의 학원(음악, 미술, 무용 등 예능학원 포함)에 지급한 교육비(윤준병의원안)</u> ○ (현행과 같음) ○ 공제한도 확대 - 대학생: 연 <u>1,000만원/명</u> (이용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연 <u>500만원/명</u> (전재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수진의원안) ○ 시행일 : 2025.1.1.(전재수의원안) 공포 후 3개월 (윤준병의원안) 공포 후 6개월 (이용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 전재수의원안 2024. 11. 4. 제출(의안번호 5195), 윤준병의원안 2024.12.31.(의안번호 7140), 이용선의원안 2025. 1. 17. 제출(의안번호 7598), 이수진의원안 2025. 1. 21. 제출(의안번호 7657)

☐ 4건의 개정안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

시키려는 것임.

① (적용대상 확대)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만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재수·이용선·이수진의원안은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전체 학원과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윤준병의원안은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전체 학원(음악, 미술, 무용 등 예능학원을 포함)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② (공제한도 상향) 전재수·윤준병·이수진의원안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이용선·이수진의원안은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각종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각급학교, 평생교육시설, 국외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교육비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료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동 제도는 지난 1977년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이 확대되어 왔음. 2008년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2013년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16년 세법개정으로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및 연 30만원 한도의 현장체험학습비(시행령 개정)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음.

2022년 세법개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²⁸⁾이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바,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28)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2018년 64.3만원²⁹⁾에서 2021년 72.1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교육비 비중은 2018년 51.1%, 2021년 44.0%로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의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18년 (비중)	2.1 (3.3)	11.2 (17.4)	21.7 (33.7)	2.2 (3.4)	28.3 (44.0)	64.3 (100.0)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둘째,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29) 분석의 편의상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인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50.3%, 초등돌봄교실 참여율이 11.5%에 불과³⁰⁾한 상황에서, 학교 이후의 자녀돌봄을 위해 부득이하게 초등학생 자녀를 체육시설에 보내는 맞벌이 부부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체학생의 예체능 및 취미,교양을 위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11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7.7% 상승하여,³¹⁾ 지원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맞벌이 부부의 실질적인 돌봄비용을 지원하게 되므로 해당 맞벌이 부부의 돌봄부담 및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저출산의 원인인 경제적 부담 중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의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초·중고등학생의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사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이

30)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24. 2. 5.

31)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통계청, 2025.3.

공교육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중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중 사교육비의 비중이 공교육비의 비중보다 크고 2023년 대비 2024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 참여시간 등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 공제한도의 확대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영유아	7.1	0.1	8.9	6.1	38.3	60.6
초등학생	-	2.7	42.7	2.1	31.1	78.5
중고등학생	-	4.6	50.6	-	36.6	91.9
대학생 이상	-	28.0	2.8	-	42.8	73.6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및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비교]

구 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전 체	27.1조원	29.2조원	78.5%	80.0%	7.3시간	7.6시간
초등학교	12.4조원	13.2조원	86.0%	87.7%	7.5시간	7.8시간
중 학교	7.2조원	7.8조원	75.4%	78.0%	7.4시간	7.8시간
고등학교	7.5조원	8.1조원	66.4%	67.3%	6.7시간	6.9시간

자료: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24. 3.
 둘째, 교육비 세제지원 확대의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자녀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소득자일수록 교육비 등 지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액의 일정비율로 이루어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귀착될 것이고,

[가구소득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60%	1.6	3.2	11.6	0.5	29.2	46.1
60%~80%	3.2	3.0	16.6	0.2	29.8	52.8
80%~100%	2.8	4.9	23.1	0.8	34.2	65.8
100%~120%	3.2	5.9	25.8	2.8	34.2	71.9
120%~140%	2.7	6.2	29.2	3.5	35.7	77.3
140%~160%	2.8	6.8	30.6	6.4	36.2	82.8
160%~	2.9	9.9	44.4	6.6	6.6	70.4

*가구소득은 2021년 3/4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원)이 100%에 해당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³²⁾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적용이 되지 않음.

셋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대규모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최소 1조 5,363억원에서 최대 2조 4,920억

32) 2023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자는 688만명(33%)임.

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추계결과를 제시하였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2026년~2030년)]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누적	연평균
전재수 의원안	-5,684	-5,361	-4,985	-4,605	-4,284	-24,920	-4,984
윤준병 의원안	-	-5,330	-4,953	-4,571	-4,249	-23,079	-4,616
이용선 의원안	-3,572	-3,307	-3,039	-2,816	-2,629	-15,363	-3,073
이수진 의원안	-5,459	-5,080	-4,699	-4,380	-4,114	-23,731	-4,7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이수진의원안과 이용선의원안은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공제 한도를 대학생인 경우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생의 등록금이 점진적인 상향추세임을 고려할 때 그 공제한도의 상향 필요성이 있음. 2024년 대학 등록금은 10년 넘게 지속되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물가 상승등 대학의 재정 부담 증가로,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26개교의 등록금이 인상되었음.³³⁾ 이로 인해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82만 7,300원 수준임. 이에 따라 공제한도를 상향하여 대학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22년 명목 대학등록금은 2008년 대비 1.0% 인상된 수준임.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

33)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 2024.4.30

을 고려한 2022년 실질등록금은 632만 6천원으로, 2008년 대비 23.2% 낮은 수준임.³⁴⁾ 이는 초·중등 사교육비 지출 상승률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둘째, 교육비 세제지원 확대의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귀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고소득층의 비율이 43.9%, 저소득층 29.2%, 중외소득계층은 26.9%로,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근로자는 그 혜택을 수혜받지 못하고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34) “정보 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1.12.